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기획예산과-3274
등록일자	2016.2.29.
결재일자	2016.2.29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	
이우석	조현석	김희주	김용운	전결 02/29 주윤중	
협조자					

### [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관련 ]

# 2015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심사 계획



#### 관련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(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)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」

#### 추진개요

- 대상기간 : 2015. 1. 1. ~ 2015. 12. 31.  
※ 예산절약(지출절약) 및 수입증대가 실제 발생한 회계연도
- 지급대상
  - 예산절약 :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감축, 예산의 집행방법, 제도개선 등에 의한 예산절약
  - 수입증대 : 특별한 노력으로 새로운 세입원 발굴, 제도개선 등에 의한 세입증대

#### 주요절차 : 1차 국별 자체 심사 ⇨ 2차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

#### 심사내용 및 지급범위

- 지급신청 사업에 대한 심사등급(A~E) 부여에 따른 지급규모(액) 결정
- ‘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’ 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

강 남 구  
(기 획 예 산 과)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『지방재정법』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~54조 등 검토완료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련 법규에 따른 추진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완료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직원 및 강남구민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별 검토사항 [계속 : ] [신규 : ]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60%;">① 관련부서 협조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( ○ )</td> </tr> <tr> <td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  )</td> </tr> <tr> <td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  )</td> </tr> <tr> <td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  )</td> </tr> <tr> <td>⑤ 시장조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  )</td> </tr> <tr> <td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  )</td> </tr> <tr> <td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○ )</td> </tr> <tr> <td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  )</td> </tr> <tr> <td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  )</td> </tr> </table>	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 ○ )	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   )	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   )	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   )	⑤ 시장조사	-----	(   )	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   )	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 ○ )	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   )	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   )
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 ○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  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  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  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시장조사	-----	(  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  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 ○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  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   )																										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규사항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 자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사항 없음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

[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관련 ]

# 2015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심사 계획

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도모하여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함

## I 관련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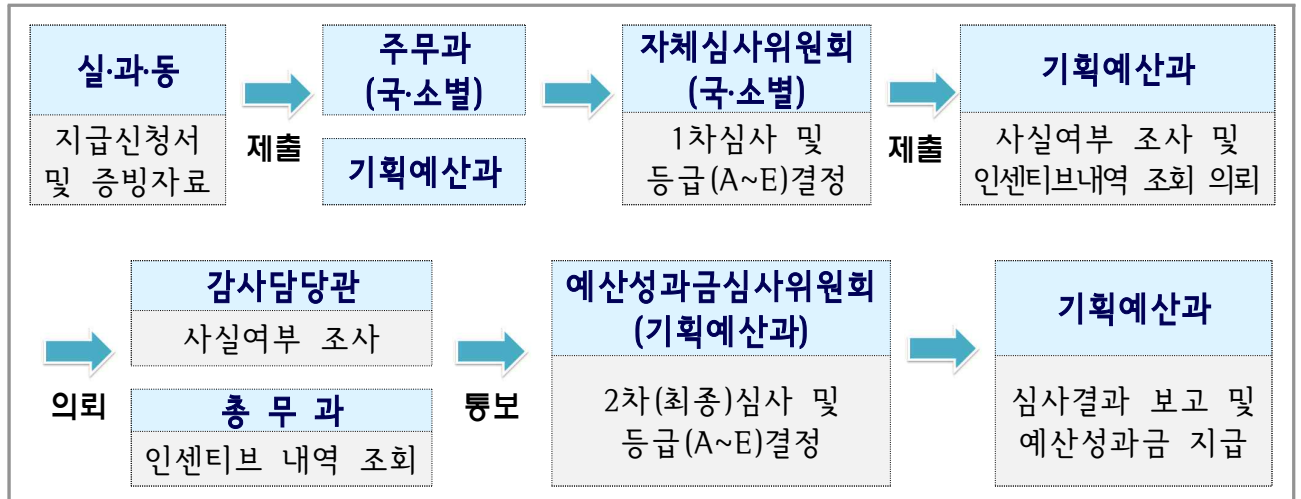
-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(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)
- 「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」 (행정자치부령 제1호)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」

## II 추진 개요

- 대상기간 : 2015. 1. 1. ~ 2015. 12. 31.  
※ 예산절약(지출절약) 및 수입증대가 실제 발생한 회계연도
- 지급대상 및 요건

지급대상	예산절약(지출절약)	수입증대
지급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</li><li>② 정원감축, 예산의 집행방법, 제도의 개선 등으로</li><li>③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</li><li>④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</li><li>②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, 제도개선 등으로</li><li>③ 세입이 증대된 경우 ※ 수입 :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</li></ul>

## □ 지급 신청절차



※ 공보실, 감사담당관, 및 각 동 주민센터(자치행정과에서 수합)의 1차심사는 행정국 자체위원회, 도시선진화담당관의 1차심사는 도시환경국 자체위원회에서 심사·처리

## III

###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

#### 1 예산절약(지출절약)의 경우

##### 가 지급대상

#### □ 인건비 : 인력운영비

-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·폐합 등으로 유희인력을 감축한 경우
-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·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

#### □ 경상적 경비 : 기본경비

-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하는 경우
-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하여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

□ 주요사업비 :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,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

-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처음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
-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, 계약상대방의 선정,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처음 예산보다 예산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
-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하는 경우
-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개선을 통하여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

□ 기타

-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처음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

**나 지급 제외대상**

□ 인건비 : 인력운영비

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 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
-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

□ 경상적 경비 : 기본경비

-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,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

□ 주요사업비 :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,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

-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-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
- 환율, 금리,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처음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

-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, 처음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,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
-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

#### □ 기타

- 그 밖에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 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

## 2 수입증대의 경우

### 가 지급 대상

#### □ 특별한 노력 등

-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음성 탈루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, 장기체납세액을 징수한 경우
-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하여 행정 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경우
- 국·공유재산의 관리방식 개선을 통하여 국·공유재산을 증대한 경우
- 직무상 창의적 노력으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(특허권 제외)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하여금 취득하게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에 수입이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
-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수입을 전년 또는 처음 계획에 비하여 증가시킨 경우

### 나 지급 제외대상

#### □ 특별한 노력 등

- 구 세입 증대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
- 해당 연도의 세입증대가 다음 연도 이후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경우
- 세금의 부과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결과 구가 패소한 경우

## IV

#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

### 1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(1차 심사)

- 구성단위 : 각 국 및 보건소, 구의회사무국 단위로 구성 · 운영
  - ※ 공보실, 감사담당관, 및 각 동 주민센터(자치행정과에서 수합)의 1차심사는 행정국 자체위원회, 도시선진화담당관의 1차심사는 도시환경국 자체위원회에서 심사·처리
- 구성인원 :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
  - 위원장 :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국의 국장(부재 시, 직무대리 순서에 의해 대행)
  - 위 원 : 국별 소속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
- 심사내용 : 해당 국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
  - 각 지급신청 건에 대한 심사등급(A~E등급) 결정 및 지급규모 산정
  - 제출기한 : 2016. 3. 18.(금) 限

### 2 강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(2차 심사)

- 구성인원 :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
  - 위 원 장 : 부구청장
  - 부위원장 : 기획경제국장
  - 위 원 : 각 국장·보건소장 및 구의회사무국장, 외부위원(2명)
  - 간 사 : 기획예산과장
- 심사내용 : 자체위원회 심사 및 기획예산과 검토결과를 토대로 최종심사
  - 각 국별 1차 심사결정 건에 대한 최종 심사등급(A~E등급) 결정 및 지급규모(지급액) 산정
  - 최종심사 : 2016. 4. 22.(금) 限 (예정)

### 3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

#### □ 심사기준

- 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
- ② 제도개선 효과
- ③ 기여자가 자발적 노력 정도
- ④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

#### □ 지급기준 및 규모

항 목	예산절약(지출절약)			수입증대
	인 건 비	경상적 경비	주요사업비(건당)	
지 급 액	감축 인건비의 1년분	예산절약액의 50%	예산절약액의 10%	수입증대액의 10%
상 한 액	20,000천원	20,000천원	100,000천원	20,000천원
가 산 율 <small>(현저한 성과 有)</small>	30%	30%	30%	-
가 산 시 상 한 액	26,000천원	26,000천원	130,000천원	-

#### □ 심사결정 등급별 반영비율

결정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	D등급	E등급
지 급 시 반영비율	100%	75%	50%	25%	15%

#### □ 격려금 지급

-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및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의 격려금 지급 가능
-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

## 4 지급 범위

- 기여자의 범위 :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
  - 구 공무원
  - 구 소속기관의 공무원
  - 「지방공기업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구의 사무를 위임·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
  - 「국민제안규정」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
  - 조직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
  - 그 밖에 구청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
  
-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
  - 기여자가 다수인 경우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
  - 지급신청 부서에서 기여도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최종 심사하여 결정

## 5 사 후 조 치

### □ 예산성과금 지급결정 사후조치

절 약 사 유		조 치 내 용
인 건 비	정원감축	직제변경 시점 기준,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 해당예산 감액 반영
	감원운용	직제에서 감축하고,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 해당예산 감액 반영
경상적경비		절약액을 불용조치하고,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 절약액의 30% 감액 반영
주요사업비		절약액을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, 계속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

## V

## 추진 일정

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수립 및 통보	기획예산과	2016. 2. 29.(월)
예산성과금 지급 신청	각부서는 국주무 부서 및 기획예산과로 각각 제출	2016. 3. 10.(목) 限
예산성과금 신청사업 국별 자체심사	자체심사위원회 개최 (국·소별 주무부서)	2016. 3. 17.(목) 限
예산성과금 국별 자체심사결과 제출	국·소별 주무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제출	2016. 3. 18.(금) 限
예산성과금 신청사업의 사실여부 조사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 조회	기획예산과에서 감사 담당관 및 총무과로 의뢰	2016. 4. 1.(금) 限
예산성과금 신청사업 최종심사	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(기획예산과)	2016. 4. 22.(금) 限
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보고	기획예산과	2016. 4. 29.(금) 限
2015년도 예산성과금 지급	기획예산과	2016. 5. 31.(화) 限

## VI

## 행정 사항

-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예산절약 및 수입 증대 사례를 건별로 작성하여 국별 자체심사위원회 주무부서와 기획 예산과로 2016. 3. 10.(목)까지 제출
- 각 국·소별 주무부서의 장은 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, 예산성과금 심사의결서와 자체심사결과내역서를 첨부하여 2016. 3. 18.(금)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

□ 예산성과금 및 수입증대 추진실적은 미사여구로 기술해서는 안되며,  
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예산성과금  
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인센티브 교부금 및 국·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는 세입증대 및  
제도개선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산성과금 대상에서 제외됨

※ 기타 다른법령 등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, 특별승급된 경우 등 동일한 사유로 예산성과금 지급 불가

붙 임 1. 예산성과금 신청서 1부

2. 예산성과금 조사의뢰서 1부

[붙임 1]

# 예산성과금 신청서

## 신청개요

- 부서명 :
- 회계구분 :
- 사업명 :
- 예산절약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절약유형 또는 수입증대	예산 편성액	실소요 예산	실집행액	예산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
계					

※ 절약유형은 인건비, 경상적경비, 주요사업비

- 성과금 요구액 : \_\_\_\_\_ 천원

※ 산출공식 : 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 × [(인건비100%(1년분), 경상적경비50%, 사업비 · 수입증대10%)]

※ 요구상한액 : 1인당 20,000천원 (단, 주요사업비의 경우 건당 1억원 초과 불가)

- 기여공무원 및 성과금 요구액

(단위 : 천원)

구분	직급	성명	기여도(%)	성과금 요구액	비고
계			100		
주 기여자					
조력자					
조력자					

##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내역

###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
- 사업내용 :
- 총사업비 :
- ...

### 예산절약의 배경 및 경위

- 
- 

### 예산절약의 내역 및 금액

- 
- 

### 개인별 기여실적

- 주된 기여자
  - ○ ○ -----
- 조력자
  - ○ ○ -----
  - ○ ○ -----

(개인별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기재)

## 예산절약(수입증대) 산출근거

○

(예산절약액 산출은 사업시행시기에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 
소요예산액을 산출하여 절약액을 계산하여야 하며, 단순히 예산편성액을  
대비하여 절약액을 산출해서는 안됨)

### 기대효과

### 증빙서류

< 예시 >

- 추진계획서(방침) 사본 1부
- 시장가격조사서(견적서 등), 조달가격표 사본 1부
- 사업착공, 준공, 지출결의서 사본 1부
- 기타, 소요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

...

[붙임 2]

## 예산성과금 조사의뢰서

				관리 번호	
부서명	직급	성명	사업명	예산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	성과금 요구액
				천원	천원
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내용				조사결과	